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친환경농수산물 제공〉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001호)

2025.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3
1.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친환경농수산물 제공	3

I. 개요

1.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00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전용기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5. 8. 6.
- (3) 회 부 일 : 2025. 8. 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50~80%의 임산부가 호르몬 변화와 심리적 영향으로 입덧을 경험하며, 입덧이 장기화될 경우 임산부의 건강을 해치고 태아에 대한 영양 불균형과 발육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그래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입덧 해소를 위해 과일 등 입맛을 돋울 수 있는 음식의 소비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영유아의 경우 알레르기 등에 취약하고, 아토피 등의 질환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잔류농약이 이러한 질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가 필요함.

그런데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기후 변화로 인해 신선한 농수산물, 특히 친환경 농수산물의 소비가 개별 소비자에게 있어 큰 부담이 되는 실정임.

이에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

경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7 신설).

II. 검토 의견

1.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친환경농수산물 제공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친환경농수산물¹⁾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10조의7(친환경 농수산물의 지원)</u>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친환경농수산물을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제공할 수 있다.</u>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유기농수산물
 - 나. 무농약농산물
 - 다.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이라 한다)

- 친환경농수산물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은 유기농수산물, 무농약 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등을 가리키는데, 성장과 건강이 특히 중요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영양 취약 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보충식품패키지를 제공하는 ‘영양 플러스 사업’²⁾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것이고, 그 밖에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급식³⁾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의 급식⁴⁾ 등에도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적용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일반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이 일반 농산물보다 가격이 더 높은 점을 고려할 때⁵⁾, 한정된 재원으로 친환경농수산물 구입을 위하여 높은 가격을 지불할 것인지 또는 가격경쟁력에서 유리한 다른

2) p. 6. ‘영양 플러스 사업 개요’ 참고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제33조(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4)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③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

5) ‘2024년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인식 및 판매장 현황 조사’(2024.9.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2024년 6월부터 9월까지 농협,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친환경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평균 가격 비교 조사의 결과는 최소 41%에서 최대 83%에 이르기까지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이 더 높았음.

다만, 농수산물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같은 종류의 농수산물이라 하더라도 매매 시점의 공급량과 수요량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며, 어느 매장에서 거래되는지 또는 유통단계 및 생산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지는 등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종류의 농수산물을 선택할지의 문제는 영양 플러스 사업을 수행하는 개별 주체가 수요자의 선호도를 바탕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임.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성장과 건강이 중요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친환경농수산물을 제공하여 건강을 증진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친환경농수산물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성장과 건강이 중요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친환경농수산물을 제공하여 건강을 증진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친환경 농산물 품질관리, 유통 시스템 구축, 전담 인력 고용 등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법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임.
경기도	○친환경농수산물 단가가 크게 상승하여 한정된 사업 예산으로는 전면 지원이 불가능하고, 품질 유지·냉장 배송·유통 관리 등 시스템 개선과 추가 인력, 예산 확보가 필수적임.
직선제 대한산부인과 개원 의사회	○대부분의 국민들이 친환경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없듯이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친환경농수산물을 제공하도록 명문화 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문 의 처

02)6788-5498

【참고자료】	영양 플러스 사업 개요
---------------	---------------------

□ 개 요

- (목적)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유도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제고
- (사업대상)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영유아(만 6세 이하)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평가를 통해 대상 선정

* '26년부터 소득기준 산출방식 변경(건강보험료 납부액 → 집, 자동차 등 소득재산)

- (지원내용) 영양교육, 상담과 대상자별 영양보충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개별상담, 집단 교육, 가정방문, 온라인 교육 등(월 1회 이상)
 - (식품제공) 맞춤형 식품패키지(6종) 제공 (월 2회, 가정배달 원칙)
- (사업추진체계)
 - : 복지부 예산*, 지침** 제공 → 지자체 자율적 시행(보건소 수행)
 - *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25년 477억원)내에서 지자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영양플러스 예산만 분리해서 산출하기 어려움
 -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지침

□ 추진 현황

- '08년부터 전국단위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24년 기준 57,454명 선정

□ 사업 성과

- ('24년 사업성과) 사업 참여 전후 빈혈 유병률 개선(38.6%→12.8%), 높은 사업 만족도(100점 만점 기준 94.9점)

<연도별 사업 만족도>

(단위: 년도, 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만족도 점수	90.7	91.2	91.2	91.3	91.5	91.6	92.5	92.8	93.6	93.2	93.8	94.6	94.9